구 매 요 구(사 양) 서

순번	재 고 번 호	품 명
1	4240375130900	양압식 공기호흡기(세트_일반형)
기능 및 용도	화재진압 시 소방요원의 호흡을 위해 착용하는 양압식 공기호흡기	
		
※ 위 형상은 특정업체, 특정제품과 무관하며 형상 참고자료임.		
요구조건	1. 규격 :「소방장비관리법」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제정·개정한 기본규격 * 관련 법규 및 기본규격 개정 시 최신 개정을 적용한다. 2. 제원 및 요구성능 가. 구성 : 공기호흡기 면체, 공기압점멸형 등지게, 고압공기용기 * 전용보관가방 및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충전기 포함. 1) 용기재질 : 카본복합용기(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합격품일 것) 2) 호흡방식 : 양압식 3) 사용시간 : 45분 4) 총 중량 : 9kg(허용공차 : ±10%) / 배터리 등 부속품 제외 중량 나. 요구성능 1) 등지게 배터리 투입구 및 홀더는 고정형이어야 한다. 2) 등지게-면체 중압호스 내 케이블 외부노출이 없어야 한다. 3) 등지게-실린더 연결부는 원터치 또는 나사선 모두 가능하나, 연결부에 나사선만 돌출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 4) 납품하는 제품은 Wifi 및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야 한다. 다. 소방장비 인증서를 득하여, 소방장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일 것 3. 납품하는 제품은 최종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(생산)한 제품이어야 한다.	
품질보증 · 검사/검수	1. 검사/검수 : 수요군(수요군 검사로 계약 체결 시 적용) 2. 품질보증형태 : 수요군검사 3. 검사/검수 가. 수요군검사는 해군 품질보증 규정 상 단순품질검사형(I형)에 따른다. 나.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(무게포함) 실시하며 제출서류 외 기술검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. 제출서류 :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 라. 관능검사 : 형태, 치수, 무게검사, 검사관의 5관(시각,청각,미각,후각,촉각) 4.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증명하여야 하며, 검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
포장 및 표시	1. 완제품 또는 구성품을 포함한 개별 포장 2. 내·외부 포장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취급상 주의사항 및 국방부 표지(KDS 8455-0002), 재고번호, 품명, 단위, 수량(묶음수량), 중량, 부피, 제조일자, 유효일자, 제조회사, A/S 전화번호 등을 표기 * "물품구매(제조) 계약 특수조건(바코드 부착)"에 따라 재고번호, 수량, 제조일자, 유효일자, 로트번호(생략가능)는 바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. 3. 포장 및 표시는 운반과 취급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며, 항온항습 및 시한성 물자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 등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. 4. 파렛트를 활용 납품 시 KS T 0006 T11R4(1100X1100) 또는 T12R4(1200X1200)의 치수와 두면 사용 4방향 R4(차입식) 형태의 제품 사용(권고사항)
소요제기자	군수사령부 물자관리처 물자팀 공병물자담당 ☎ 055-549-1510
검사관	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 일반물자검사담당 ☎ 055-549-1718

구 매 요 구(사 양) 서

순번	재 고 번 호	품 명
1	4240375130918	양압식 공기호흡기 예비실린더(180도 타입)
기능 및 용도	화재진압 시 소방요원의 호흡을 위해 착용하는 양압식 공기호흡기 예비 실린더	





※ 위 형상은 특정업체, 특정제품과 무관하며 형상 참고자료임.

요구조건

1. 규격 :「소방장비관리법」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제정·개정한 기본규격
 * 관련 법규 및 기본규격 개정 시 최신 개정을 적용한다.
2. 제원 및 요구성능
 가. 내용적 : 6.8 L (리터)
 나. 총 중량 : 3.6 kg(허용공차 : ±10%) * 충전공기, 밸브무게 제외
 다. 사용시간 : 45분
 라. 용기재질 : 카본복합용기
 마. 용기 밸브 타입 : **일자형(180도)**
 바. 소방장비 인증서를 득하여, 소방장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일 것
 사. 동일 계약 건의 공기호흡기 세트와 동일한 인증번호로 상호연결 및 호환사용이 가능할 것
3. 납품하는 제품은 최종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(생산)한 제품이어야 한다.

품질보증 . 검사/검수

1. 검사/검수 : 수요군(수요군 검사로 계약 체결 시 적용)
2. 품질보증형태 : 수요군검사
3. 검사/검수
 가. 수요군검사는 해군 품질보증 규정 상 단순품질검사형(I형)에 따른다.
 나.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(무게포함) 실시하며 제출서류 외 기술검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다. 제출서류 :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
 라. 관능검사 : 형태, 치수, 무게검사, 검사관의 5관(시각,청각,미각,후각,촉각)
4.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증명하여야 하며, 검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포장 및 표시

1. 완제품 또는 구성품을 포함한 개별 포장
2. 내·외부 포장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취급상 주의사항 및 국방부 표지(KDS 8455-0002), 재고번호, 품명, 단위, 수량(묶음수량), 중량, 부피, 제조일자, 유효일자, 제조회사, A/S 전화번호 등을 표기
 * "물품구매(제조) 계약 특수조건(바코드 부착)"에 따라 재고번호, 수량, 제조일자, 유효일자, 로트번호(생략가능)는 바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.
3. 포장 및 표시는 운반과 취급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며, 항온항습 및 시한성 물자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 등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.

	4. 파렛트를 활용 납품 시 KS T 0006 T11R4(1100X1100) 또는 T12R4(1200X1200)의 치수와 두면 사용 4방향 R4(차입식) 형태의 제품 사용(권고사항)
소요제기자	군수사령부 물자관리처 물자팀 공병물자담당 ☎ 055-549-1510
검사관	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 일반물자검사담당 ☎ 055-549-1718